

3. 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659호 1998. 2. 24

주 요 골 자

- 가. 생태계의 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함(령 제8조제4호)
- 나.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을 모든 건축물 및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함(령 제15조의2 신설).
- 다.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의 공급이 곤란한 공공기관 또는 물사용량이 1일 1천 톤 이상인 공장 등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27조의2 신설)
- 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장학기금적립 및 학교급식시설지원을 추가 함(령 별표) <법제처 제공>

개 정 이 유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1997. 8. 28, 법률 제5395호)됨에 따라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과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금지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군수를”을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를”로 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6조제2항제3호중 “연도별사업계획”을 “연도별사업계획(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도용자재의 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용 단체 표준 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구매 대상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인 것
 3.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수도용으로 생산된 것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한국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시험·검토를 거쳐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것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는 수도용자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의 제목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준공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로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24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중 “음용수수질기준”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매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를”을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27조중 “제16조 내지 제20조(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16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지방상수도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3. 수요자가 법 제52조의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사업자와 당해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제29조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로, “설치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로 한다.

제30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법 제12조·법 제27조·법 제33조의2”를 “법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의 세부사업내역란 제1호중 “간이급수시설”을 “상수도시설”로 하고, 동표와 육영사업의 세부사업내역란 중 “학자금·장학금지급등”을 “학자금·장학금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시설지원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중 “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 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수도용 단체 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

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주택회보